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1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4. 29.
3. 회부연월일 : 2026.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로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사전 통보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u><신설></u> <u>1. 2.</u> (생략) ③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 제66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u>2. 제66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u> <u>3. 4.</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수립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다수의 인파가 운집하거나 다양한 임시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축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임.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12. 26.>
-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I. 서론	주최자 유무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체계
II. 지역축제 추진 단계별 검토 사항	지역축제 시작-진행-종료 단계별 검토 사항
III. 지역축제 위험 유형별 관리 요령	인파·장소·재료·야간·기상여건 등 별 관리 요령
IV. 부록	과거 안전사고 사례,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등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2024))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로서 주로 민간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정하려는 과태료 부과금액과 관련하여, 현행법이 차등적으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면서, 각 부과 금액에 따른 부과·징수 주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0.>

현행법의 규정 상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는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서 정하려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볼 때, 과태료 부과금액은 200만원
이하로 보는 것이 현행법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보임³⁾.

한편, 안전관리계획 통보 또는 제출 의무 위반이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고 있는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등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고 있어 개정안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12. 26.>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6. 1. 7., 2020. 6. 9.>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
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3) 개정안의 의안원문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고 되어 있으나, 법률안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
로 되어 있음.

[과태료 부과 금액 관련 유사 입법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5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이하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 제42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이하 생략)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사회재난대책법안」에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해당 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사회재난대책법안」(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098호)

[「사회재난대책법안」 중 관련 내용]

제15조(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등)

제15조(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이하 “민간 지역축제”라 한다)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되거나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완료한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민간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민간 지역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자료 : 행정안전부)

문 의 처

02)6788-5349

참고

연도별(2007-2023년) 지역축제 안전사고 현황

연도	건수	피해현황		
		사망(명)	부상(명)	재산피해(만원)
합계	53	19	208	32,735
2007	5	2	16	4,900
2008	9	3	8	135
2009	7	10	98	11,500
2010	-	-	-	-
2011	-	-	-	-
2012	-	-	-	-
2013	3	-	39	-
2014	1	-	1	-
2015	2	2	-	-
2016	-	-	-	-
2017	5	-	7	-
2018	4	2	6	-
2019	5	-	15	-
2020	-	-	-	-
2021	-	-	-	-
2022	11	-	17	16,200
2023	1	-	1	-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2024))